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 설치〉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0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 설치(안 제5조의5 신설)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4. 17.
3.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 설치 (안 제5조의5 신설)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⑤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⑥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제1항),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2항),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제3항),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 계획) ① -----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제33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

현 행	개 정 안
	<u>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u>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5조의2¹⁾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의3²⁾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정분야의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³⁾들은 계획의 합리성,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행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외교법」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⁴⁾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규율하고 있는 「도서관법」도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외부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심의·조정을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서관법」 (법률 제21745호, 2026. 10.29. 시행)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도 부처별 운영 수준이 상이하여 ‘국립’ 기관의 위상과 전문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⁶⁾

더 나아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이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6)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 2018. p.170.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구분됨.⁷⁾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여러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개별 정책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화체육관광부이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국립박물관이 존재⁸⁾하더라도 현행법 제30조⁹⁾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박물관의 장에게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어 정책 총괄 기능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아울러, 다수 부처와 관련된 업무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차관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음.¹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으로 하더라도, 통일적 기준에 따

8)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을 제외하면 29개소임.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보고)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른 국·공립박물관의 관리·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 제31조¹¹⁾를 통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6904호, 2003 5. 29. 일부개정)을 통하여 폐지된 바 있음.

둘째, 안 제5조의5 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4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인력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립·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이 임의적 사항인데, 이러한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5928호, 2000. 2. 9. 시행)

제31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2. 박물관 및 미술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예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 인력, 자료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¹²⁾

즉, 시설과 필수 인력에 관한 사항은 ‘등록’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법령에 그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기준은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설립되어 등록까지 완료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운영 기준까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제5호는 현행법 제9조의4¹³⁾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참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항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 제6조의4(14)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추어야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경우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에 명문화하기 어렵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심의·조정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활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활용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2천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관람객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2. 재난 유형별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손상·멸실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사항

3.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우선적 보호·구조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기준 20개 부처에서 58개의 국립박물관을 운영¹⁵⁾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에 따라 국립박물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나 운영성과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정부 차원의 국립박물관 설립 종합계획 수립, 통일적인 관리·운영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 고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

1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은 절반 수준인 29개소임.

견을 제시함.

또한,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신설 필요시 부처 책임하 설치가 원칙이며, 국무총리 소속 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과다 설치 시 전체 국정운영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상술한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한 검토사항 등과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 4) 자료의 희소성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미 술 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 물 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 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 물 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 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 족 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 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